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목 차>

1. 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정보 범위
2. 일반수신자의 기준
3. 개인정보 전송방식
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 성 자	이름	권오혁
	담당부서 (과)	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하승철		연락처	02-2100-3172
	과장	심성재		이 메 일	ohhyeok@korea.kr

2024. 12. 13.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정보 범위		
	2.규제조문	제42조의2제3호, 제42조의4제1항제3호		
	3.위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4.유형	신설	5.재입법예고	2024.12.16~2024.12.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민의 적극적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를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이동하여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14) ○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 통신 분야에 에너지 분야를 추가하여 우선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확대		
	7.규제내용	○ 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정보 범위에 에너지 분야 추가하고 에너지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정보 범위 기준을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에너지 분야의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에너지 분야 기관, 법인, 단체 및 전송정보를 활용하는 정보주체 등		
	9.규제목표	○ 개인정보 전송요구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편의성·효용성 증진 ○ 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통해 기존 폐쇄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한단계 진일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비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하면서 전송설비 구축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기존에 갖춘 설비 및 인력, 중계 전문기관 기능을 활용하여 대체 가능 ○ (편익)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수수료 확보 가능, 데이터 융합을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및 에너지 서비스 제공 가능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u> <u>1.~2. (생략)</u> <u>3. 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자(이하 “에너지정보전송자”라 한다)</u> <u>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u> <u>나. 다음 1) 및 2)의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u> <u>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u> <u>2)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u>

현 행	개 정 안
	<u>제42조의4(전송 요구 정보의 범위)</u> <u>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를 자신, 일반수신자 또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 <u>1.~2. (생략)</u> <u>3. 에너지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에너지 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에너지 정보전송자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정보</u> <u>가.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u> <u>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u>

현 행	개 정 안
	<u>보</u> <u>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u> <u>한 에너지 관련 정보</u>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적극적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를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이동하여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한 단계 진일보 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3.3.14)
- * 기업·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후 수동적 지위에 머물던 국민이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 권리행사 가능
-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 통신 분야에 에너지 분야를 추가하여 우선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확대
- 동 개정안은 우선시행 분야에 에너지 분야를 추가하고, 에너지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의 범위 기준을 정하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 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정보 범위에 에너지 분야 추가하고 에너지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정보 범위 기준을 규정
 - (에너지 분야 정보전송자)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 판매사업자와 ②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그 밖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자
 - (에너지 분야 전송 요구 정보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및 ②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③그 밖에 유사한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국민 체감도가 큰 에너지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편의성·효용성 증진
-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통해 기존 폐쇄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한단계 진일보
- 에너지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의 범위 기준을 정하여 정보전송자 대상 및 정보주체 등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제고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조치결과
마이데이터 협의회 (부처·산업·학계·법조계)	○ 전송요구권 하위법령 등 제도 세부기준안 의견청취('24.3.8)	필요사항 시행령안 반영
에너지 분야 이해관계자 간담회	○ 제도 관련 의견청취('24.8.23.) *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조회 및 수렴 ('24.9.2~9.13)	필요사항 시행령안 반영

3. 규제목표

- 개인정보 전송요구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편의성·효용성 증진
-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통해 기존 폐쇄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한단계 진일보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를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국민 체감도가 큰 에너지 분야 추가 필요
- 또한 에너지 분야의 정보전송자 대상인 기관·법인·단체 및 전송 정보를 활용할 정보주체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의 범위 기준을 규정할 필요
- 상기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목적 및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미적용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에너지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의 범위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에너지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의 범위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미적용	에너지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의 범위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가 적합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에너지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의 범위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에너지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의 범위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제2조제9호의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제7호, 제2조제22항~23항, 제21조제2항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 개정안은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의 범위에 에너지 분야를 추가한 사항으로, 이미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완료되어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 정보전송자가 정보의 전송시 수수료를 통해 전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고 불합리한 전송요구는 거절·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준수 가능성 높음
- 또한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응하여 개인 정보를 전송하면서 기존에 구축한 설비를 활용할 수 있고, 중계 전문기관이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도록 하여 전송업무 처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마련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 회의, 산업계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음

2. 향후 평가계획

- 개인정보처리자가 동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등 관련 참여자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

3. 종합결론

- 동 제정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국민 체감도가 큰 에너지 분야를 추가하여 전분야 마이데이터의 확산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기존의 폐쇄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한단계 진일보하기 위한 사항이며,
- 에너지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의 범위 기준을 정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 및 정보주체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에너지 분야 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정보의 범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하면서 전송설비 구축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기존에 갖춘 설비 및 인력, 중계전문기관 기능을 활용하여 대체 가능 ○ (편익)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수수료 확보 가능, 데이터 융합을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및 에너지 서비스 제공 가능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에너지 분야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의 범위>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에너지 분야 정보전송자로 지정된 자
활동제목	개인정보의 전송에 관한 사항
비용항목	운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하면서 전송설비 구축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기존에 갖춘 설비 및 인력, 중계전문기관 기능을 활용하여 대체 가능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에너지 분야 정보전송자로 지정된 자
활동제목	개인정보의 전송요구에 관한 사항
편익항목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수수료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에 의해 전송한 전송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전송요구한 정보수신자에게 수수료 청구 가능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편의 서비스 이용
편익항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편의 서비스 확대 등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에너지 분야 확대를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및 데이터 융합을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및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일반수신자의 기준		
	2.규제조문	제42조의3제1항		
	3.위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12.16 ~ 2024.12.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민의 적극적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를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이동하여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14) ○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수신자가 갖춰야하는 시설 및 기술을 구체화하여 규정		
	7.규제내용	○ 일반수신자의 업무 및 일반수신자가 갖춰야하는 시설 및 기술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일반수신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9.규제목표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사업자가 일반수신자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침해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 ○ 정보주체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번거로운 서류 발급이나 행정절차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어 효용성·편의성도 증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	○ (비용)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고 관리·보호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송받는 정보를 통해 고유 업무 수행시 정보의 진위확인 절차 단축에 따른 비용감축 효과도 발생 ○ (편익) 등록된 일반수신자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는 전송받아 쉽고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제공받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 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 정비 계획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 ① 법</u> <u>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u> <u>을 충족하는 자”란 고유의 업무를</u> <u>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u> <u>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u> <u>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로서 다음</u> <u>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호위원</u> <u>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u> <u>술을 갖춘 자를 말한다.</u> <u>1. 표준 전송 절차, 전송시스템 연</u> <u>계 및 전송 보안 기준 등을 충족</u> <u>하는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u> <u>2. 전송 내역의 기록·보관 및 전</u> <u>송받은 개인정보의 분리 보관을</u> <u>위한 시스템</u> <u>3.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u> <u>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탐지</u> <u>및 차단 시스템</u> <u>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u> <u>및 접근 통제 시스템</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적극적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를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이동하여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한 단계 진일보 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3.3.14)
- * 기업·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후 수동적 지위에 머물던 국민이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 권리행사 가능
-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수신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고 관리·보호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추어 등록할 필요
- 동 개정안은 일반수신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 기준을 구체화 하여 정하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 일반수신자의 업무 및 일반수신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
 - (업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 (요건) 표준 전송 절차, 전송시스템 연계 및 전송 보안 기준 등을 충족하는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 전송 내역의 기록·보관 및 전송 받은 개인정보의 분리 보관을 위한 시스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탐지 및 차단 시스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시스템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일반수신자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전송받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시설 및 기술을 갖추 필요
가 있어, 그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

※ 기존 금융·공공 분야도 전송받는 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송받은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수신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및 기술, 보호체계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일반수신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일반수신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조치결과
마이데이터 협의회 (부처·산업·학계·법조계)	○ 전송요구권 하위법령 등 제도 세부기준안 의견청취(3.8)	필요사항 시행령안 반영
마이데이터 실무협의체 (의료·통신 분야 산업계)	○ 제도 관련 의견청취 (‘23.11월~’24.3월)	필요사항 시행령안 반영

3. 규제목표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일반수신자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침해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구현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갖춘 자를 일반수신자로 등록할 필요
- 또한 일반수신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수신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상기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목적 및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일반수신자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및 기술 관련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일반수신자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및 기술 관련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미적용	일반수신자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및 기술 관련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가 적합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일반수신자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및 기술 관련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일반수신자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및 기술 관련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제2항제2호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 개정안은 일반수신자 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구체화 한 것으로, 해당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수신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일반수신자 업무로 인해 고유 업무 수행시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단축으로 인한 비용감축, 서비스 질 향상 등의 편익이 크므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 회의, 부문(의료, 통신)별 실무협의체 회의,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음

2. 향후 평가계획

- 개인정보처리자가 동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등 관련 참여자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

3. 종합결론

- 동 제정안은 전송 정보 관리 및 보호 등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를 일반수신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전송요구권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며, 일반수신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업·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일반수신자의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고 관리·보호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송받는 정보를 통해 고유 업무 수행시 정보의 진위확인 절차 단축에 따른 비용감축 효과도 발생
- (편익) 등록된 일반수신자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전송받아 쉽고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국민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제공받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일반수신자의 기준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일반수신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활동제 목	일반수신자의 기준
비용항목	운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동 규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고 관리·보호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이행과정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설비·기술 활용할 수 있어 그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수신자
활동제 목	고유 업무 수행시 정보의 진위확인 등 활용
편익항목	절차 단축으로 인한 비용감축, 서비스 질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일반수신자 업무를 통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단축에 따른 비용 감축 효과 발생 및 서비스 질 향상 가능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 목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편의 서비스 이용
편익항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편의 서비스 확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고 관리·보호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을 준수하는 기업·기관을 통해 자신의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고, 마이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신뢰 형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 가능 ○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제공받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개인정보 전송 방식		
	2.규제조문	제42조의6제3항, 제7항		
	3.위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12.16~2024.12.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민의 적극적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를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이동하여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3.3.14) ○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전송방식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		
	7.규제내용	○ 정보전송시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되는 전송방법 구체화, 접근수단을 사용·보관하는 방식으로 정보 수집하는 금지하는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정보를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정보주체, 정부·공공기관 등		
	9.규제목표	○ 개인정보의 전송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전 분야 개인정보의 전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전송체계 구축 ○ 정보주체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하여 건강 관리, 통신 요금 추천 등 의료·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비스 효용성이 증가하게 되고, 전송 과정에서도 번거로운 서류 발급이나 행정절차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고 합리적 소비가 가능하게 됨 따라 효용성 및 편의성도 증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비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를 전송하면서 전송설비 구축 등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기존에 갖춘 설비 및 인력, 중계 전문기관 기능을 활용 가능하며 전송수신자에게 수수료 청구 등 가능 ○ (편익) 정보전송자는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정보 전송이 가능해지고 전송방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며, 정보주체에게는 전송정보 불일치 등 오전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 가능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해당

			관련된 규제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 방법 등)</u> <u>①~② (생략)</u> <u>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식(본인전송요구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u> <u>1.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u> <u>2. 정보전송자와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u> <u>3. 정보전송자와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간 상호 식별·인증할 수 있는 방식</u> <u>4. 정보전송자와 일반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u> <u>④~⑥ (생략)</u> <u>⑦ 일반수신자 및 일반특수 전문기관은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용·보관함으로써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이하 “전송요구대상정보”라 한다)를 수집</u>

현 행	개 정 안
	<u>해서는 아니 된다.</u> <u>1. 다음 각 목의 접근수단</u> <u>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u> <u>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u> <u>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u> <u>나. 제3자전송요구를 위하여 정보</u> <u>전송자에 등록된 정보주체의</u> <u>식별자 또는 인증정보</u> <u>다. 정보주체의 생체정보</u> <u>2. 다음 각 목의 방법을 통해 정보</u> <u>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방식</u> <u>가. 제1호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u> <u>관하는 방법</u> <u>나. 제1호의 접근수단에 접근할</u> <u>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u> <u>다. 제1호의 접근수단에 대한 지</u> <u>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u> <u>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적극적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를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이동하여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한 단계 진일보 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3.3.14)

* 기업·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후 수동적 지위에 머물던 국민이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 권리행사 가능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데이터는 이중 분야간 데이터 이동·연계가 핵심이므로, 개별 분야별로 추진되던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전송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정부는 4차위·관계부처합동으로 논의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21.6.11. 4차위 의결)을 통해, 법제도 기반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함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보의 안전한 전송 방법 등을 구체화 하여 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 정보전송자가 전송요구권에 의해 정보 전송시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되는 전송방법 구체화, 접근 수단을 사용·보관하는 방식으로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
 - (전송방식)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 정보전송자·일반수신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간 상호식별·인증할 수 있는 방식 및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정보전송시 안전하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함

- (금지방법) 인증서, 정보주체 식별자·인증정보, 생체정보 등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확보,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을 사실상 확보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개인정보 전송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전 분야에서 일관되고 안전한 체계로 제도 운영 가능
- 정부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절차 방식을 마련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형태로 안전한 전송이 가능하며, 데이터 관리 및 이종 분야·산업간 데이터 융합 활성화 가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조치결과
마이데이터 협의회 (부처·산업·학계·법조계)	○ 전송요구권 하위법령 등 제도 세부기준안 의견청취(3.8)	필요사항 시행령안 반영
마이데이터 실무협의체 (의료·통신 분야 산업계)	○ 제도 관련 의견청취 (‘23.11월~’24.3월)	필요사항 시행령안 반영

3. 규제목표

-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극적인 권리로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후 수동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전송요구권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 권리 행사가 가능해짐
- 정보전송자의 전송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에 관한 일관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가능함
- 정보전송자는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정보 전송이 가능해지고 전송 방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며, 정보주체에게는 전송정보 불일치 등 오전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 가능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개인정보처리자와의 관계에서 수동적 지위에 있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
- 동 개정안은 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에 따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송방식 등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 및 기준, 전송요구권이 기 도입된 금융·공공 분야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으로 규정
- 분야별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송·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송방법 및 절차가 일관적·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안전한 정보 전송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없는 데이터 전송·활용 가능
- 상기의 사항을 고려할 때 목적 및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미적용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개인정보의 전송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구체적 절차 관련 사항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개인정보의 전송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미적용	개인정보의 전송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가 적합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개인정보의 전송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개인정보의 전송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3항, 제7항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전송방식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 정보전송자가 정보의 전송시 수수료를 통해 전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고 불합리한 전송요구는 거절·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준수 가능성 높음
- 또한,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를 전송하면서 기존에 구축한 설비를 활용할 수 있고, 중계 전문기관이 정보 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도록 하여 전송업무 처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마련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 회의, 부문(의료, 통신)별 실무협의체 회의,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음

2. 향후 평가계획

- 개인정보처리자가 동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등 관련 참여자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

3. 종합결론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법 제35조의2)됨에 따라, 안전한 정보의 전송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
- 분야별 정보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전송·연계·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송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고시의 타당성이 인정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개인정보 전송방식 관련 구체적 기준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를 전송하면서 전송설비 구축 등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기존에 갖춘 설비 및 인력, 중계 전문기관 기능을 활용 가능하며 전송수신자에게 수수료 청구 등 가능
- (편익) 정보전송자는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정보 전송이 가능해지고 전송방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며, 정보주체에게는 전송정보 불일치 등 오전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 가능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개인정보 전송 방식 관련 구체적 기준 마련>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정보전송자
활동제목	개인정보 전송 방식 준수
비용항목	설비,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를 전송하면서 전송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 API 방식으로 전송 등의 방식으로 전송해야 함. 이를 위한 전송설비 구축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기존에 갖춘 설비 및 인력, 중계 전문기관 기능을 활용 가능하며 전송수신자에게 수수료 청구 등 가능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정보전송자 등 개인정보처리자
활동제목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전송
편익항목	영업이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정보전송자는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정보 전송이 가능해지고, 전송방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② 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정보주체
활동제목	오전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정보주체에게는 전송정보 불일치 등 오전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송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가능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국민들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송방식을 통해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 건강관리, 식단관리, 통신 요금 추천 등 의료·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번거로운 서류 발급이나 행정절차 없이 본인이 필요한 곳에 데이터를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 효용성 및 편의성도 증진 ○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 위급상황 알림,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 편익도 증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		
	2.규제조문	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별표1의3, 제42조의12제2항·제7항, 제42조의14제2항		
	3.위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12.16~2024.12.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민의 적극적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를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이동하여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3.3.14) ○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전송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 및 절차, 취소 절차 등 규정 필요		
	7.규제내용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책임보험·공제 기준), 변경승인 사항, 업무 중지·폐지 및 지정취소 조치명령 등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9.규제목표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침해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비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받기 위해 책임보험·공제 기준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에 이미 가입된 책임보험·공제를 통해 손해배상책임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인정하는 등 비용대체 가능 ○ (편익) 정보주체는 전송요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시 책임보험·공제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책임보험·공제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 가능한 안전망 확보. 전문기관 업무 중지·폐지 및 지정취소시 조치명령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 가능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여부기준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u> <u>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① 법 제35</u> <u>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u> <u>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은</u> <u>다음 각 호와 같다.</u> <u>1.~2. (생략)</u> <u>3. 다음 각 목의 재정능력을 모두</u> <u>갖출 것(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u> <u>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u> <u>가.~나. (생략)</u> <u>다.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u> <u>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u> <u>을 적립할 것(법 제39조의7제2항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u> <u>제외한다). 이 경우 보험·공제의</u> <u>최저가입금액 또는 준비금의 최소</u> <u>적립금액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u> <u>다.</u> <u>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u> <u>의 지정 등) ① (생략)</u> <u>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u> <u>각 호의 사항(보호위원회가 정하여</u> <u>고시하는 경미한 내용은 제외한다)</u> <u>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u> <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u>1. 사업계획서(전송받으려는 정보의</u> <u>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u>

현 행	개 정 안
	<u>2.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u> <u>③~⑥ (생략)</u> <u>⑦ 중계 전문기관은 중계 업무를 중</u> <u>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중</u> <u>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6개월 전</u> <u>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u> <u>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중계</u> <u>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u> <u>명할 수 있다.</u> <u>1. 해당 중계 전문기관이 보유하고</u> <u>있는 개인정보의 파기(다른 법령</u> <u>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u> <u>외한다)</u> <u>2. 수행 중인 업무의 다른 중계 전</u> <u>문기관으로의 이전</u> <u>3. 업무 중지·폐지 예정 사실의 다</u> <u>음 각 목의 자에 대한 통지</u> <u>가. 해당 중계 전문기관이 보유하고</u> <u>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u> <u>나. 해당 중계 전문기관에 정보를</u> <u>전송하는 정보전송자</u> <u>다. 해당 중계 전문기관으로부터</u> <u>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수신자</u> <u>및 일반특수전문기관</u> <u>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u> <u>의 지정취소 등) ① (생략)</u> <u>②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u>

현 행	개 정 안
	<u>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u> <u>1. 수행 중인 업무의 중단</u> <u>2.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u> <u>(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3. 수행 중인 업무의 다른 중계 전문기관으로의 이전(중계 전문기관의 경우에 한정한다)</u> <u>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 사실의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u>

[별표 1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

구 분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
중계 전문기관 및 일반 전문기관	10억원. 다만, 지정신청자가 제42조의11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5에 따른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으로 한다.
특수 전문기관	10억원. 다만, 지정신청자가 제42조의11제2항 각 호(제1호의 경우에는 진료 목적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5에 따른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으로 한다.

비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위 표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14)으로 도입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에 따라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전송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필요
-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정 및 취소절차 등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책임보험·공제 기준), 변경승인 사항, 업무중지·폐지 및 지정취소 조치명령 등 규정
 - (책임보험·공제 기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을 규정
 - (변경승인 사항)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사업계획서 또는 개인정보 관리계획서를 변경(경미한 내용은 제외)할 경우 지정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조치명령) 중계전문기관이 업무를 중지·폐지하거나 지정권자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파기 등 지정권자의 조치명령 사항을 규정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업무를 처리하는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공제의 최소 금액 기준을 규정할 필요

※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의7)에서도 일정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손해 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전 승인이 필요한 변경사항, 업무 중지·폐지 또는 지정 취소시 조치명령 사항 등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송받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보호를 강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조치결과
마이데이터 협의회 (부처·산업·학계·법조계)	○ 전송요구권 하위법령 등 제도 세부기준안 의견청취(3.8)	필요사항 시행령안 반영
마이데이터 실무협의체 (의료·통신 분야 산업계)	○ 제도 관련 의견청취 (‘23.11월~’24.3월)	필요사항 시행령안 반영

3. 규제목표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침해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구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업무를 처리하는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공제의 최소 금액 기준을 규정할 필요
- 또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승인 및 업무 중지·지정취소시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상기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목적 및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미적용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책임보험·공제 기준), 변경승인, 업무 중지·폐지 및 지정취소시 조치명령 관련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책임보험·공제 기준), 변경승인, 업무 중지·폐지 및 지정취소시 조치명령 관련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미적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책임보험·공제 기준), 변경승인, 업무 중지·폐지 및 지정취소시 조치명령 관련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가 적합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책임보험·공제 기준), 변경승인, 업무 중지·폐지 및 지정취소시 조치명령 관련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책임보험·공제 기준), 변경승인, 업무 중지·폐지 및 지정취소시 조치명령 관련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5조의9,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9
- 변경승인 : 「신용정보법」 제8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8조
- 조치명령 : 「신용정보법」 제45조의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6조의3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자가 거쳐야 하는 지정 기준 등을 구체화 한 것으로, 해당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고, 전문기관 지정시 그동안 확보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전송받아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등 편익이 크므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 회의, 부문(의료, 통신)별 실무협의체 회의,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음

2. 향후 평가계획

- 개인정보처리자가 동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등 관련 참여자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

3. 종합결론

- 동 제정안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책임보험·공제의 최소금액 기준을 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변경승인 및 업무 중지·지정취소시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전송요구권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받기 위해 책임보험·공제 기준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에 이미 가입된 책임보험·공제를 통해 손해배상책임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인정하는 등 비용대체 가능
- (편익) 정보주체는 전송요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시 책임 보험·공제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책임보험·공제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 가능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활동제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책임보험·공제 기준)
비용항목	운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받기 위해 책임보험·공제 기준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에 이미 가입된 책임보험·공제를 통해 손해배상책임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인정하는 등 비용대체 가능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활동제목	손해배상 책임 이행
편익항목	신규 서비스 창출 등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시 책임보험·공제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이 가능하도록 안정망 확보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책임보험·공제를 통한 보상, 업무 중지시 개인정보 보호
편익항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국민 편의 서비스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실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정보주체는 전송요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시 책임보험·공제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정보주체가 이용하는 전문기관이 업무 중지·폐지 및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조치명령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